

## 신탁계약 주요 변경사항

효력발생일 : 2018년 10월 01일

▶ 투자신탁명:

피델리티 연금 미국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피델리티 연금 이머징 마켓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피델리티 연금 아시아 하이일드 전환형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주요변경내용:

- 환매대금 지급 주기 예외 규정 삭제
- 전환을 위한 환매 처리 주기 예외 규정 삭제
- 관련 자투자신탁 변경 반영 (명칭 변경, 해지 등)
- 기재 수정 등

▶ 변경대비표:

<b>피델리티 연금 미국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b>			
항 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 (정의)	관련 자투자신탁 변경 반영 (명칭 변경, 해지)	16. “전환대상 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을 말한다. 가. 피델리티 연금 코리아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주식)  (...)  바. 피델리티 연금 미국 하이일드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아. 피델리티 연금 글로벌 하이일드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16. “전환대상 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을 말한다. 가. 피델리티 연금 코리아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주식- 재간접형)  (...)  (삭제)  (...)  (삭제)
제22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환매대금 지급 주기 예외 규정 삭제	②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당일 포함)부터 제 8 영업일에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외 금융기관의 연휴 등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10 영업일까지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제 22 조의 2 에서 정한 환매청구 접수시간 경과 이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②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당일 포함)부터 제 8 영업일에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삭제)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제 22 조의 2 에서 정한 환매청구 접수시간 경과 이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피델리티 연금 미국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항 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p>환매청구일(당일 포함)로부터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9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외 금융기관의 연휴 등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11 영업일까지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p>	<p>환매청구일(당일 포함)로부터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9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b>(삭제)</b></p>
제26조 (투자 신탁의 전환)	<p>관련 자투자신탁 변경 반영 (명칭 변경)</p> <p>관련 자투자신탁 변경 반영 (해지)</p> <p>전환을 위한 환매 처리 주기 예외 규정 삭제 (단, <b>피델리티 연금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b> 제외)</p>	<p>② 제 1 항에 따른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전환처리한다.</p> <p>1. 피델리티 연금 코리아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주식)에서 다른 전환대상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 2 영업일(15 시 30 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 4 영업일(15 시 30 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4 영업일)에 전환처리한다. 이 경우 전환대상 투자신탁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p>(...)</p> <p>3. 피델리티 연금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피델리티 연금 이머징 마켓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피델리티 연금 미국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u>피델리티 연금 미국 하이일드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u>, 피델리티 연금 유럽 하이일드</p>	<p>② 제 1 항에 따른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전환처리한다.</p> <p>1. 피델리티 연금 코리아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서 다른 전환대상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 2 영업일(15 시 30 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 4 영업일(15 시 30 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4 영업일)에 전환처리한다. 이 경우 전환대상 투자신탁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p>(...)</p> <p>3. 피델리티 연금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피델리티 연금 이머징 마켓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피델리티 연금 미국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b>및 (삭제)</b> 피델리티 연금 유럽 하이일드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b>(삭제)</b></p>

피델리티 연금 미국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항 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및 피델리티 연금 글로벌 하이일드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에서 다른 전환대상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 3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 8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9 영업일)에 전환처리한다. 다만, 해외 금융기관의 연휴 등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 10 영업일(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11 영업일)에 전환처리한다. 이 경우 전환대상 투자신탁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에서 다른 전환대상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 3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 8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9 영업일)에 전환처리한다. 다만, <b>피델리티 연금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의 경우</b> , 해외 금융기관의 연휴 등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 10 영업일(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11 영업일)에 전환처리한다. 이 경우 전환대상 투자신탁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40조 (투 자신탁재산 의 운용비용 등)	기재 명확화	② 제 1 항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및 투자신탁과 관련한 납세신고서 작성비용	② 제 1 항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투자신탁재산의 <b>회계 및 감사비용과 투자신탁에 관한</b> 납세신고서 작성비용
부칙	신탁계약 변경 체결	-	<b>(추가)</b> <b>부칙 (2018.10.00)</b>  *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내용:

- 환매대금 지급 주기 예외 규정 삭제
- 전환을 위한 환매 처리 주기 예외 규정 삭제
- 관련 자투자신탁 변경 반영 (명칭 변경, 해지 등)
- 관련 법령 개정 반영 (수익자 공고 등)
- 기재 수정 등

▶ 변경대비표:

피델리티 연금 이머징 마켓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채권 - 재간접형)			
항 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 (정의)	관련 자투자신탁 변경 반영 (명칭 변경, 해지)	16. “전환대상 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을 말한다. 가. 피델리티 연금 코리아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주식)  (...)  바. <u>피델리티 연금 미국 하이일드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u>  (...)  아. <u>피델리티 연금 글로벌 하이일드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u>	16. “전환대상 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을 말한다. 가. 피델리티 연금 코리아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del>주식-</del> <u>재간접형</u> )  (...)  ( <del>삭제</del> )  (...)  ( <del>삭제</del> )
제22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환매대금 지급 주기 예외 규정 삭제	②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당일 포함)부터 제 8 영업일에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u>다만, 해외 금융기관의 연휴 등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10 영업일까지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u>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제 22 조의 2 에서 정한 환매청구 접수시간	②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당일 포함)부터 제 8 영업일에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 <del>삭제</del>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제 22 조의 2 에서 정한 환매청구 접수시간

피델리티 연금 이머징 마켓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항 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경과 이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당일 포함)로부터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9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u>다만, 해외 금융기관의 연휴 등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11 영업일까지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u>	경과 이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당일 포함)로부터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9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b>(삭제)</b>
제26조 (투자 신탁의 전환)	관련 자투자신탁 변경 반영 (명칭 변경)          관련 자투자신탁 변경 반영 (해지)  전환을 위한 환매 처리 주기 예외 규정 삭제 (단, <b>피델리티 연금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전환형</b>	② 제 1 항에 따른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전환처리한다.  1. 피델리티 연금 코리아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주식)에서 다른 전환대상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 2 영업일(15 시 30 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 4 영업일(15 시 30 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4 영업일)에 전환처리한다. 이 경우 전환대상 투자신탁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  3. 피델리티 연금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피델리티 연금 이머징 마켓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피델리티 연금 미국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피델리티 연금 미국 하이일드 증권 전환형	② 제 1 항에 따른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전환처리한다.  1. 피델리티 연금 코리아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서 다른 전환대상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 2 영업일(15 시 30 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 4 영업일(15 시 30 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4 영업일)에 전환처리한다. 이 경우 전환대상 투자신탁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  3. 피델리티 연금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피델리티 연금 이머징 마켓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피델리티 연금 미국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b>및 (삭제)</b> 피델리티 연금 유럽 하이일드

피델리티 연금 이머징 마켓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항 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제외)	<p>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피델리티 연금 유럽 하이일드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및 피델리티 연금 글로벌 하이일드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에서 다른 전환대상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p> <p>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 3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 8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9 영업일)에 전환처리한다. 다만, 해외 금융기관의 연휴 등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 10 영업일(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11 영업일)에 전환처리한다. 이 경우 전환대상 투자신탁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p>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b>(삭제)</b>에서 다른 전환대상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p> <p>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 3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 8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9 영업일)에 전환처리한다. 다만, <b>피델리티 연금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의 경우</b>, 해외 금융기관의 연휴 등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 10 영업일(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11 영업일)에 전환처리한다. 이 경우 전환대상 투자신탁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제40조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	기재 명확화	<p>② 제 1 항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p> <p>1.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및 투자신탁과 <u>관련한</u> 납세신고서 작성비용</p>	<p>② 제 1 항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p> <p>1. 투자신탁재산의 <u>회계 및 감사비용과 투자신탁에 관한</u> 납세신고서 작성비용</p>
제51조 (수익자에 대한 공고 등)	관련 법령 개정 반영	<p>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고,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p>	<p>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고,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p>

피델리티 연금 이머징 마켓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채권 - 재간접형)			
항 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게시하여야 한다.	게시하여야 한다. <u>다만, 동항 제 8 호 및 제 9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 그 사항이 발생하는 속하는 월말의 다음 영업일에 이를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다.</u>
부칙	신탁계약 체결 변경	-	<b>(추가)</b> <b>부칙 (2018.10.00)</b>  *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내용:

- 관련 자투자신탁 변경 반영 (명칭 변경, 해지, 전환을 위한 환매 처리 주기 예외 규정 삭제 등)
- 관련 법령 개정 반영 (수익자 공고 등)
- 기재 수정 등

▶ 변경대비표:

피델리티 연금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항 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 (정의)	관련 자투자신탁 변경 반영 (명칭 변경, 해지)	<p>16. “전환대상 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을 말한다.</p> <p>가. 피델리티 연금 코리아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주식)</p> <p>(...)</p> <p>바. 피델리티 연금 미국 하이일드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p> <p>(...)</p> <p>아. 피델리티 연금 글로벌 하이일드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p>	<p>16. “전환대상 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을 말한다.</p> <p>가. 피델리티 연금 코리아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p> <p>(...)</p> <p>(삭제)</p> <p>(...)</p> <p>(삭제)</p>
제26조 (투자 신탁의 전환)	관련 자투자신탁 변경 반영 (명칭 변경)	<p>② 제 1 항에 따른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전환처리한다.</p> <p>1. 피델리티 연금 코리아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주식)에서 다른 전환대상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 2 영업일(15 시 30 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 4 영업일(15 시 30 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4 영업일)에 전환처리한다. 이 경우 전환대상 투자신탁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p>② 제 1 항에 따른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전환처리한다.</p> <p>1. 피델리티 연금 코리아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서 다른 전환대상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 2 영업일(15 시 30 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 4 영업일(15 시 30 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4 영업일)에 전환처리한다. 이 경우 전환대상 투자신탁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피델리티 연금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항 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p>관련 자투자신탁 변경 반영 (해지)</p> <p>관련 자투자신탁 변경 반영 (전환을 위한 환매 처리 주기 예외 규정 삭제. 단, <b>피델리티 연금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b> 제외)</p>	<p>(...)</p> <p>3. 피델리티 연금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피델리티 연금 이머징 마켓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피델리티 연금 미국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u>피델리티 연금 미국 하이일드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u> 피델리티 연금 유럽 하이일드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및 피델리티 연금 글로벌 하이일드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에서 다른 전환대상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 3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 8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9 영업일)에 전환처리한다. 다만, 해외 금융기관의 연휴 등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 10 영업일(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11 영업일)에 전환처리한다. 이 경우 전환대상 투자신탁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p>(...)</p> <p>3. 피델리티 연금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피델리티 연금 이머징 마켓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피델리티 연금 미국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b>및 (삭제)</b> 피델리티 연금 유럽 하이일드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삭제)에서 다른 전환대상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 3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 8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 9 영업일)에 전환처리한다. 다만, <u>피델리티 연금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의 경우,</u> 해외 금융기관의 연휴 등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환청구일(당일포함)부터 제 10 영업일(17 시 이후 전환청구시 제 11 영업일)에 전환처리한다. 이 경우 전환대상 투자신탁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제40조 (투 자신탁재산 의 운용비용 등)	기재 명확화	<p>② 제 1 항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p> <p>1. 투자신탁재산의 <u>회계감사비용 및 투자신탁과 관련한 납세신고서 작성비용</u></p>	<p>② 제 1 항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p> <p>1. 투자신탁재산의 <u>회계 및 감사비용과 투자신탁에 관한 납세신고서 작성비용</u></p>

피델리티 연금 아시아 하이일드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항 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제51조 (수익자에 대한 공고 등)	관련 법령 개정 반영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고,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고,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b><u>다만, 동항 제 8 호 및 제 9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 그 사항이 발생하는 속하는 월말의 다음 영업일에 이를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다.</u></b>
부칙	신탁계약 변경 체결	-	<b><u>(추가)</u></b> <b><u>부칙 (2018.10.00)</u></b>  *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